



본란의 기사는 미국내 통상자문회사인 Manchester Trad^社의 통상보고서 및 EC주재 변호사의 보고서를 기재한 것이며 세부사항에 대한 문의는 本會國際部(TEL:553-0941/7)로 연락 바랍니다.

1. EEA가 향후

한국전자산업에 미치는 영향

1) EEA 개관

1990년 6월 EC와 EFTA국 (오스트리아, 핀란드, 아이스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등 7개국)은 인구 3억 8천만명의 공동 EC/EFTA 시장 또는 EEA(European Economic Area)의 창설에 목표를 두어 협상개시하고 1992년 5월 2일 EC 12개 회원국과 EFTA 7개국간 EEA의 창설에 공식 서명했다. EEA의 협정은 ECSC(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와 EEC 조약의 주요규정을 포함하는 129개 Article로 구성되어 있다.

EEA 협정이 일단 발효되면 재화, 노동, 서비스, 자본이동 등 4가지의 기본 자유화가 19개국에 적용될 것이다.

더우기, 소위 “Acquis Communautaire” 즉 EC 사법재판소 법을 포함하여 최근까지 채택된 1,400개의 기본 및 부칙 법으로 구성되어 있는 EC법은 EEA 협정이 시행될시 EFTA국에도 적용될 것이다.

EEA 협정이 발효되려면, 관련 19개국의 의회에서 각각 비준을 받아야 하므로 비준과정상 다소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들면, 몇몇 국가들은 의회에서 특히 과반수 득표를 규정(예, 노르웨이:3/4 과반수)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에서는 국민투표를 실시해

야한다. (예, 스위스)

뿐만아니라, EC 의회는 EEA 협정을 또한 비준해야하며 EC 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키거나 또는 입법 권한을 축소시키는 규정이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EEA 창설에 대한 EC 사법재판소의 자체행위와 비준의 어려운점에도 불구하고 EEA협정 발효 시한인 1993. 1. 1에는 타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많은 옵저버들에 따르면 본 시한은 다소 낙관적인 것이며 EEA 협정은 대략적으로 1993년 중반에야 비로서 시행될 것이다.

2) EEA가 향후 한국 전자산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 EC 역내 무역은 현재 EC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되는 일반관세, GSP,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조치, 원산지 규정 그리고 무역정책 수단으로 취해지는 조치 등 여러 수입규제 조치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가). 일반관세(Customs Duties)

EC 또는 EFTA 국가로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되는 일반관세는 대체로 현행 제도와 다른 점이 없을 것이다.

첫째로, 제3국으로부터 EC 역내로 직수입되는 제품은 통상적인 공동 관세가 적용되며 또한 EFTA 국가로 수입되는 제품은 EFTA 관련

국가의 일반관세가 부과된다.

둘째로, EFTA 국가를 통해 EC 역내로 수입되는 비EEA 원산지 제품은 통상적인 공동 관세의 부과 대상이된다.

예를들면, 스웨덴으로 수입되는 한국산 VCR은 스웨덴의 일반관세가 부과되며 동 한국산 VCR이 EC 역내로 수입되는 경우 EC의 관세가 부과된다. EFTA산 제품의 EC 역내 무관세 수입은 단지 EEA 원산지 제품에만 적용된다. 이러한 무관세 적용은 한국전자산업에 관심사가 될 수 있는데 가령, 한국의 VCR 제조업자가 스웨덴 공장에서 조립하여 생산한 VCR이 스웨덴의 원산지를 획득하게 되면 동 VCR 제품은 EC 역내로 수입될시 관세가 부과 되지 않는다.

따라서, EFTA 역내의 노동 및 제품공정 코스트와 함께 스웨덴의 관세 코스트가 EC 관세보다 낮을 경우 한국산업에 이익이 될 수 있다. 요약하면, 제품의 원산지는 EC 역내로 제품이 수입될시 중요하며 비 EEA 원산지의 제품은 EC와 EFTA의 일반관세가 부과된다.

EEA의 제품은 EFTA 국가로부터 수입될시 무관세로 EC에 수입될 수 있으며 반대의 경우도 무관세로 수입된다.

나) GSP(Generalized System Preferences)

상기에서 기술한 관세규정과 유사하게 EEA 협정이 원칙적으로 GSP 적용상의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다.

다시말해서, 기억해야할 단 한가지 사항은 EC 또는 EFTA 국가로 수입되는 제품의 원산지이다. 제품의 원산지는 GSP의 수혜를 결정하게되며 동제품이 EEA의 제품으로 가공처리되면 EC 또는 EFTA내로 무관세로 수입된다.

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무역정책 수단에 따른 조치

EEA 협정 Article 26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제3국의 불법적인 무역관행에 대한 반덤핑 조치, 상계관계 및 조치들은 EEA 협정내에 달리

규정되지 않았을 경우 체결약국간에는 적용되지 않음” 여기에 유념할점은 Article 8(2)에 따르면 Article 26만이 체약국산 제품에 적용된다.

따라서 Article 8(2)와 함께 Article 26은 EEA 창설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적용, 비EEA원산지가 아닌 제품에 대한 무역정책 수단에 따른 조치에도 영향을 주지 않으며 이러한 상황은 일반관세 및 GSP와도 동등하다.

EEA의 원산지 제품은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또는 무역정책 수단에 따른 수입규제 조치에 적용되지 않는다.

더우기, Protocol 13에 따르면, “EEA Article” 26의 적용은 동협정의 규정이 포함하는 분야에 제한된다.

더우기, 체약국간 기타 해결방법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EEA Article 26은 제3국에 목표를 둔 반덤핑 조치, 상계관세, 제3국의 불법적인 무역관행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 등의 우회를 방지코자 체약국가들이 상정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에 편견 없이 적용된다.

Protocol 13의 첫번째 귀절은 한국 전자산업에 실제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EEA 제품은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또는 무역정책 수단에 따른 수입규제 조치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규정이다.

두번째 귀절은 향후 한국전자산업에 중요한 것이다. 예를들어, 한국업체가 EEA의 원산지를 획득하기 위해 스웨덴 또는 EFTA 다른국가에서 공장을 설립하고 VCR 제품을 생산할 경우 동제품은 원칙적으로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또는 무역정책 수단에 따른 수입규제 조치의 대상이 되지않으나 Protocol 13은 EEA 국가들이 향후 “우회(Circumvention)” 문제를 다룰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업체가 EEA 원산지를 획득하기 위해 EFTA내에 공장을 설립할 경우 그와같은 상황은 발생될 것으로 전망될 수 있기 때문에 현행 EC 반덤핑법과 유사한 “Anti-Circumvention” 규정이 채택될 것으로 또한 전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Protocol 13은 한국업계가 상기에 서 언급된 원산지의 EFTA 국가에 투자할 계획을 세울때 유념해야 할 점이다.

라) 세이프가드 조치(Safeguard measures)

상기에서 서술한 일반관세 및 GSP 상황과 유사하게 세이프가드 조치의 적용에도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다.

다시말해서, 유념해야 할 한가지 문제점은 EC 또는 EFTA 국가에 수입되는 제품의 원산지이다.

제품의 원산지는 세이프가드 조치의 대상을 결정했다. EEA 제품으로 가공될 경우, 동제품은 EC 또는 EFTA로 수입될시 세이프가드 조치의 대상이 되지않았다.

마)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

원산지 규정은 EEA 협정의 Protocol 4에 규정되어 있으며 제품의 원산지는 (가)~(라)에서 언급된 조치들의 적용여부를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EC 역내로 수입될시 EEA 원산지 제품은 원칙적으로 (가)~(라)에서 언급된 조치의 대상이 되지않으나, EEA의 원산지를 획득하지 못한 제품은 EFTA 또는 EC 국가로 수입될시 (가)~(라)의 조치에 적용받게 된다.

Protocol 4의 관련 규정은 Article 2와 4이다. Article 2의 관련 부분에 따르면 “한 제품이 EEA에서 충분히 노동 또는 가공처리될 경우 동제품은 EEA 협정내의 EEA원산지로 간주된다”. Article 4는 충분히 노동 또는 가공처리(Sufficiently worked or processed)에 대한 요구조건을 규정해 놓고 있다.

따라서 제품이 EEA 원산지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Protocol 4의 Appendix II에 명기된 것처럼 충분한 노동 또는 가공처리 요구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EEA 협정은 사실 현행 EC 규정의 적용범위의 확장을 의미한다. 다시말해서, EC내에 현

재 적용되는 규정들은 EEA에 적용될 것이다.

이같은 점에서 기억해야 할 중요 규정들은 경쟁, 국가보조금, 공공구매 및 Article 115의 적용에 관한 규정이다.

2. 한국산 위성방송 수신기 A/D 제소설

한국산 위성방송 수신기(Satellite Television Receivers)에 대한 반덤핑 제소설이 있는데, EC의 제소자는 독일의 Grundig사이다.

이번 제소건은 '92년 6월 10일 열리는 반덤핑 자문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으며 본 제소설이 사실이라는 조사가 개시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3. 한국산 CDP 부품 A/D 제소설

Philips사, 한국 및 일본의 업체들이 EC 역내에서 조립한 CDP 제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설이 있는데 EC 집행위는 EC 반덤핑 규정 Article 13(10)에 따라 반덤핑 조사개시를 원치않기 때문에 이번 케이스는 예를 들어 한국 및 일본 업체들이 EC에 수출한 CDP mechanism인 특정 주요부품에 대해 반덤핑 제소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4. VCR UT 재심

EC 집행위는 한국의 VCR 제조업체인 삼성, 금성, 대우사가 제출한 UT 재심요청과 관련하여 하향조정안 (downward modifications)을 제의 했는데, EIAK와 한국의 VCR 제조업체들은 EC 집행위의 이번 UT 조정은 충분치 않으며 EC 역내시장에서 한국의 VCR 시장점유율을 계속 잠식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5. 한국산 3.5" Micro Disks

'92년 6월 10일 열리는 EC 반덤핑 자문위원회

의 미팅에서 일본산 3.5" Micro Disks 반덤핑 케이스에 한국산도 적용시키는 문제가 협의될 것이다.

이번 케이스로 한국의 금성, SKC사가 영향을 받을 것이며 반덤핑 확대적용에 대한 이의 제기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6. 집행위 제10차 연례보고서

'92년 5월 25일 EC 집행위는 EC의회의 승인을 위해 반덤핑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고, 본 보고서에는 새롭거나 흥미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단 한가지 관심을 끄는 것은 한국이 과거 5년동안 제3위의 반덤핑 케이스의 주요 목표국이었다는 사실이다.

7. EC 공동관세코드

향후 2주내 ('92. 6월중순)에 새로운 "공동관세코드 (Common Customs CODE)"가 공식 발표될 예정인데 새로운 공동관세코드는 협행코드와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는 전망되지 않으나, 원산지 규정, 제품분류 (Classifications), 운송 (Transit), EC 역내의 수입절차 및 EC내 잠정수입에 관한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출입 업체에 영향을 줄것이다.

특히 제품분류에 관한 규정은 EIAK에 관심사가 될 수 있다. 특정 세번 (CN heading)에 따라 제품이 분류되면 동일 제품은 무관세로 수입될 수 있는 반면, 별개의 제품으로 분류될 경우 관세가 부과된다.

8. 반도체 관세인하

최근 Dataquest의 연구에 의하면, 현행 반도체에 대한 14%의 관세율이 9%로 인하될 경우 유럽의 반도체 산업은 소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9. EC의 산업정책과 기타 산업뉴스

'92년 5월 20일 EC집행위는 "유럽 통신기기 산업에 대한 의견 (Communication on the European Telecommunication Equipment Industry)"을 발표하고 EC 집행위의 의견은 '91. 11 EC 각료이사회가 '91. 3월의 유럽전자 및 정보 기술에 관한 EC 집행위의 의견에 관한 결의안 (Resolution)을 채택했을 때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본 보고서는 EC 통신산업의 장단점을 분석하였고 동 분야에서 한국, 일본, 싱가폴, 홍콩, 미국, EFTA 국가들과의 무역적자를 언급했다 또한 본 보고서는 EC 통신산업의 경쟁력을 회복시키는데 조치들이 필요로 하며 이러한 조치들은 우선적으로 EC산업 자체의 책무 (Responsibility)라고 언급했다.

EC 집행위의 의견에 따르면, 통신산업의 개별분야에 대한 EC의 조치는 다음 4가지의 기본 목표를 두어야 하는데

- 1) 진정한 역내시장의 체계화,
- 2) 기술개발지원,
- 3) 터미널기기 산업분야의 위상제고,
- 4) EC산업의 제3국 시장진출을 위한 공정한 경쟁풍토 추구,

EC 집행위는 공정한 경쟁풍토를 조성키 위해 세계의 주요 산업분야에서 마케팅, 시장진출 및 경쟁판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한 목적으로 정보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